



대 법 원
제 2 부
판 결

사 건 2012다18762 손해배상(기)

원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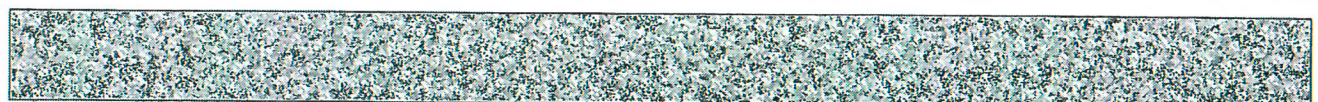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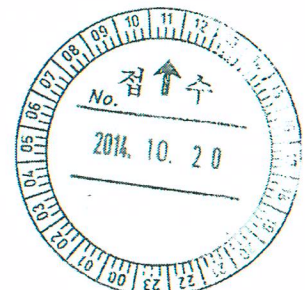
피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한국토지주택공사(변경전 명칭 : 대한주택공사)

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(정자동 217)

피고보조참가인 1.

2.



2014-0040696610-118C3

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.

1 / 8

법원



3.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8. 선고 2009나66558 판결
판 결 선 고 2014. 10. 15.

주 문

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1. '하자항목별 공사내역표 및 하자보수 비용' 표 기재 3-3. '추가감정신청사항(설계변경에 의한 품질 등 하락항목)'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'상고보충이유서'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1.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
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6다67602, 67619 판결 등 참조).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,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

